

대일전범재판에 나타난 일본군 ‘위안부’의 ‘강제동원성’*

— 도쿄재판의 전범기록을 중심으로 —

강 경 자**

keiko84@daum.net

〈 目 次 〉

- | | |
|------------------------------------|---------------------------------------|
| 1. 서론 | 1) 도쿄재판부의 ‘판결문’ 속 ‘위안부’의 ‘강제동원성’ |
| 2. 일본군 ‘위안부’ 사료로서의 도쿄재판 자료 | 2) ‘선서진술서’ 및 ‘심문 조서’ 속 ‘위안부’의 ‘강제동원성’ |
| 3. 도쿄재판의 재판자료 속 일본군 ‘위안부’의 ‘강제동원성’ | 4. 결론 |

Key word : 대일전범재판(War crimes trials against Japan), ‘위안부’(Comfort women), 도쿄재판(Tokyo Trial), 강제동원(Forced mobilization)

1. 서론

본 논문은 대일전범재판 기록 속에 나타난 일본군 ‘위안부’ 관련 자료들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있어서 ‘공권력’에 의한 ‘강제동원성’을 입증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일본군 ‘위안부’의 문제에 있어서 ‘강제동원성’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핵심적 문제 중의 하나이다. 이는 ‘강제동원성’ 문제가 정부 차원에서의 법적 책임 소재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한일 외교간, 국내 여론에 있어서 갈등 촉발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8S1A5B5A0703748)

** 영산대학교 국제학연구소 전임연구원, 일본정치 전공

현 아베 정권은 명목상으로는 고노담화를 인정, 계승한다고 하면서도, 실제적으로는 ‘협약의 강제성’과 같은 개념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의 강제동원성을 철저히 부인해 오고 있다. 국내에서도 강제동원성을 둘러싼 진실 공방이 지속되면서 사회적 갈등을 야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모든 사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역사적 사료에 기초한 실증적 연구가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를 반증하고 있다.

대일전범재판자료와 관련된 ‘위안부’ 연구는 그간 요시미 요시아키(吉見義明), 하야시 히로후미(林博史)들을 통해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져 왔다. 하야시는 방대한 도쿄재판자료 중에서 네덜란드, 중국, 프랑스의 검찰단이 제출한 증거 서류 중 ‘위안부’ 관련 증거자료 7점을 발굴하였다.¹⁾ 도쿄재판의 ‘위안부’ 관련 증거자료는 이후 발굴된 자료까지 총 8점이며, 요시미는 도쿄재판에 제출된 성폭력 관련 자료 40점-선서 공술서 혹은 구술서등의 증거 자료들의 원문을 수집 정리한 자료집²⁾을 발간하였다. 이 자료집에는 도쿄재판 위안부 관련 자료 8점의 원문자료가 수록되어 있다.

또한 이들 도쿄재판의 증거자료 총 8점은 쓰지모토 기요미(辻元清美)의원에 의해 일본정부가 인정해야 하는 ‘위안부’ 자료로서 국회에 ‘질문주의서’의 형태로 제출되었다.³⁾ 일본 정부는 쓰지모토의 질문주의서에 대한 답변으로서, 고노담화를 입장을 견지하는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이들 ‘위안부’ 관련 자료에 대해 부정하거나 반박하지 못했다. 따라서 이들 사료는 일본정부도 인정하는 공인된 ‘위안부’ 관련 사료라고 할 수 있다.⁴⁾

그러나 이러한 대일전범재판의 사료들은 학자들에 의해 어렵게 발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발굴된 1차 자료에 입각한 실증적 연구는 국내외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⁵⁾

1) 林博史(2009) 『戦犯裁判の研究 戦犯裁判政策の形成から東京裁判・BC級裁判まで』, 勉誠出版 pp.284-285

2) 吉見義明(2011) 『東京裁判-性暴力関係資料』, 現代史料出版

3) 『いわゆる従軍慰安婦問題に関連する資料等』に関する質問主意書 http://www.shugiin.go.jp/internet/itdb_shitsumon.nsf/html/shitsumon/a186266.htm

4) 林博史(2015) 『日本軍「慰安婦」問題の核心』, 花伝社 pp.42-43

5) 위안부 관련 사료발굴은 국내에서도 활발히 진행되어 동북아역사재단의 연구자료 및 여가부 지원으로 이루어진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의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정부의 견해 : 자료와 해설』, 세종대학교의 『일본의 위안부문제 증거자료집:1937년부터

본 연구는 이와같은 문제의식 하에 이들 연구자들에 의해 발굴, 수집된 원문 자료 및 도쿄재판의 판결문 원문을 1차 자료로 하여, 구체적으로는 도쿄재판의 판결문과 8점의 선서진술서 및 심문조서를 기초로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형태 및 수법의 패턴을 분석하고, ‘위안부’의 동원주체를 고찰함으로써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있어서의 ‘공권력’에 의한 ‘강제동원성’을 실증적으로 확인해 나가는 작업을 진행하고자 한다.

2. 일본군 ‘위안부’ 사료로서의 도쿄재판 자료

도쿄재판의 목적 중 하나는 미래세대를 위해 아시아 태평양전쟁의 역사를 명백히 하는 것이었다. 때문에 역사적으로 이렇게 상세하게 검증하고 엄밀한 증거조사가 이루어진 적이 없었을 만큼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⁶⁾ 그 결과 419명증인, 779건의 선서진술서, 4336건의 증거자료, 1200페이지에 달하는 판결문이라는 방대한 기록을 남겼다. 이러한 도쿄재판의 기록들은 만주사변에 서부터 태평양전쟁에 이르기까지 일본군의 잔학행위의 전모를 드러내는 중요한 역사적 사료로서, ‘역사규명의 출발점’이자 “역사의 서고(書庫)”가 되었다.⁷⁾

이러한 도쿄재판의 증거 자료는 판결문에서 신중하게 검토한 자료임을 선언하고 있다는 점, 연합국 검찰단(IPS)이 제출한 증거서류는 철저한 검증을 통해 작성된 공문서라는 점, 무엇보다 일본 정부는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도쿄재판의 자료와 판결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일본 정부도 그 내용을 부정할 수 없는 국제적 공문서라는 점 등에서 연구 사료로서의 가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1945년까지의 위안부문제 관련 자료를 번역 분석.1), 서울대학교 인권센터의 정진성 연구팀에 의한 『끌려가다, 버려지다, 우리 앞에 서다. 시리즈: 사진과 자료로 보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 여성 이야기』등의 대표적 업적들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요 사료의 발굴 성과에 비해 이들 문헌과 사료를 기초로 한 실증적 연구는 미흡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6) N·보이스터(外)(2012) 岡田良之助訳 『東京裁判を再評価する』日本評論社 p.461

7) 半藤一利(外)(2015) 『BC級戦犯裁判を読む』日本経済新聞出版社 p.8

다만 ‘위안부’ 관련 사료로서 도쿄재판의 자료들은 도쿄재판의 방대한 재판 기록들에 너무나 미미하다. 국제형사재판인 도쿄재판 법정에서 ‘위안부’ 문제는 그 제도 자체가 “인도에 반하는 죄”와 같은 죄로 기소되거나 중대한 전쟁범죄로서 주목받은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국제법학자 우스티니아 돌고필(Ustina Dolgopol)에 따르면 당시 검찰단에 의해 수집된 증거자료들은 ‘위안부’ 문제를 ‘인도에 반한 죄’로 기소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또한 ‘위안부’ 제도의 창설과 유지에 책임있는 자들을 특정하여 충분히 기소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⁸⁾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인권 등에 대한 인식 부족 및 식민지문제를 무시한 연합국의 자세, 인종차별주의적 인식 등은 ‘위안부’ 문제의 범죄의 중대성을 간과하고 “고문, 살인, 강간 및 그 외 가장 비인도적인 야만적인 성질의 잔인행위”인 ‘통례의 전쟁범죄’ 하나로서 다루었을 뿐이었다.⁹⁾

‘통례의 전쟁범죄’를 추급함에 있어서도 그 중심에는 백인 포로들에게 행해진 포로학대의 문제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통례의 전쟁범죄’ 관련 증거자료 총 2600건 가운데 포로관련 문제가 1035건, 66%라고 하는 높은 비중을 차지한 데 반해, ‘위안부’ 문제 관련 자료는 총 8건에 불과했다.¹⁰⁾ 이는 도쿄재판 검찰단이 통례의 전쟁 범죄 추급에 있어서 포로학대의 입증을 최우선시 함으로써, ‘위안부’ 문제는 공식적인 추급 대상으로 고려조차 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강간, 성폭력, ‘위안부’ 문제에 있어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조선과 대만의 여성들에게 행해진 성폭력, 강제매음과 같은 사건은 처음부터 제외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여러 한계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중 ‘강간, 성폭력’ 증거 자료로 제출된 자료 속에서 8점의 ‘위안부’ 관련 자료들이 발굴되었다는 것이며, 이들 자료들을 통해 당시 일본군에 의해 자행된 ‘위안부’ 관련 만행들의 행태를 엿볼 수 있다는 것, 무엇보다 ‘위안부’ 관련 ‘동원의 수법’과 ‘패턴’ 및 그 동원 주체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래의 목록은 도쿄재판의 전범기록 속에 나타난 위안부 관련 자료들이다.

8) 田中利幸外編(2013) 『再論東京裁判 何を裁き,何を裁かなかったのか』 大月書店 pp.386-387

9) 内海愛子(2000) 『戦犯裁判と性暴力』 緑風出版 p.95

10) 宇田川幸大(2018) 『考証 東京裁判: 戦争と戦後を読み解く』 吉川弘文館 pp.124-125

<표1> 국회 제출된 목록을 참조하여 연구자가 작성

지역	재판 자료명	일시
인도네시아 보르네오섬 폰티아낙	일본 해군 점령 기간 중 네덜란드령 동인도 서부 보르네오에서의 강제 매음 행위에 관한 보고	1946년 7월 5일
인도네시아 보르네오섬 폰티아낙	폰티아낙 학살 사건에 관한 1946년 3월 13일짜 林秀一 서명 신문 조서	1946년 3월 13일
인도네시아 모아섬	모아섬 오히라 세이다이 육군중위의 선서진술서	1946년 1월 13일
인도네시아 자바섬 마겔랑	자바섬 마겔랑 예 베르만의 신문조서	1946년 5월 16일
포르투갈령 동티모르	동티모르 루이스 안토니오 누메스 로드리게스의 선서진술서	1946년 6월 26일
베트남	베트남 란손 뉴엔 티선의 구술서 발췌	불명
중국 계림	중국계림군사위원회행정원 범죄증거조사소대 계림시민항소1	1946년 5월 27일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인도차이나에서의 잔학행위 가브릴러그 페르난공술서	1947년 1월 7일

본 논문은 이 목록 속 도쿄재판의 전범기록들의 원문 내용 및 판결문의 내용을 고찰하여, 이들 기록 속에 나타난 일본군 ‘위안부’의 동원의 수법과 형태, 동원주체를 확인해 나가고자 한다.

3. 도쿄재판의 재판자료 속 일본군 ‘위안부’의 ‘강제동원성’

본 장에서는 상기 언급한 도쿄재판의 재판 기록 속 일본군 ‘위안부’ 관련 자료들- 판결문 및 선서진술서, 신문조서 내용을 확인함으로써, ‘위안부’ 동원의 형태와 수법을 분석하고자 한다.

1) 도쿄재판부의 ‘판결문’ 속 ‘위안부’의 ‘강제동원성’

도쿄재판의 판결문은 A부(제1장-3장) B부(제4장-제8장) C부(제9장-10장)로 나누어져 있으며, ‘위안부’관련 사건을 포함한 일본군의 잔학행위에 대한 기술은 B부 제8장 통례의 전쟁범죄(잔학행위)에 나온다. 판결문 제8장 서두에서는 잔학행위의 내용 및 관련 증거서류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본 재판소에 제출된 잔학행위 및 기타 통례의 전쟁범죄에 관한 증거는 중국에서 전쟁개시부터 1945년 8월 일본의 항복까지, 고문, 살인, 강간 및 그 밖의 가장 비인도적인 야만적 성질의 잔인행위가 일본의 육해군에 의해 제멋대로 행해진 것을 입증하고 있다. 수 개월의 기간에 걸쳐 본 재판소는 증인으로부터 구두와 선서진술서에 의한 증언을 들었다. **이들 증인은 모든 전쟁지역에서 행해진 잔학행위에 대해 상세히 증언하였다. 그것은 매우 큰 규모로 행해졌으나, 모든 전쟁지역에서 거의 똑같은 공통적 방법으로 행해졌기 때문에 결론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 즉 잔학행위는 일본 정부 또는 그 개개의 관리 및 군대의 지도자에 의해, 비밀리 명령받았거나, 고의로 허락하였던가 하는 것이다.**¹¹⁾

이 판결문 서두는 ‘통례의 전쟁범죄’에 대한 판결의 전제를 밝힌 것으로서 두가지 사실을 확인시켜 준다고 할 것이다. 첫째는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강간 살인 방화와 같은 잔학행위가 군대 지도자의 명령 혹은 허락을 통해 이루어진 ‘군의 관여’에 의한 것이라는 것과 이들 잔학행위는 “거의 똑같은 패턴”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이는 재판자료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의 동원의 행태 및 수법의 패턴을 분석하는 것은 보편적 일본군 ‘위안부’의 동원 행태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어진 판결문의 문언을 통해 이와같은 잔학행위는 다 기록할 수 없을 만큼 수없이 이루어졌으며, 판결문에 기록된 잔학행위는 일부에 지나지 않음을 볼 수 있다.

모든 증거를 신중히 검토하여 고려한 후, 우리들은 제출된 다량의 구술, 서면에 의한 증거를 이와같은 판결 속에 상세히 기술하는 것은 실제적이지 않음을 인정한다. 잔학행위의 규모와 성질의 기술에 대해서는 재판기록을 참조하지 않으면 안된다.¹²⁾

따라서 이와같은 판결문의 문언을 기초로 판결문에 언급된 중국 계림(桂林)에서의 ‘위안부’ 사건 기술 부분을 볼 때, 이는 계림에 국한된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많은 지역에서 동일한 패턴의 잔학행위가 다발적으로 있었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

11) 極東國際軍事裁判所(1949) 『東京裁判判決—極東國際軍事裁判所判決文』 毎日新聞社 p.238

12) 極東國際軍事裁判所(1949) 前掲書 p.238

계림을 점령하고 있는 동안 일본군은 강간과 약탈과 같은 모든 종류의 잔학행위를 했다. **공장을 설립한다는 구실로 그들은 여공을 모집했다. 이렇게 모집된 부녀자에게 일본군대를 위해 추임을 강제했다.** 1945년 7월에 계림에서 철퇴하기 전에 일본 군대는 방화반을 편제하여 계림의 전상업구역 건축물에 방화하였다.¹³⁾

판결문에 적시되어 있는 ‘계림’의 사건은 ‘위안부’ 동원 관련 두가지 사실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첫째, 위안부‘동원’에 있어서 부녀자들은 감언, 사기와 같은 속임에 넘어가 ‘위안부’로 모집당했다는 것이다. 감언, 사기와 같은 속임수는 일본군 ‘위안부’ 동원 수법에서 가장 흔하게 쓰인 방법 중 하나였다.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속임에 의한 동원은 형법적으로 ‘유괴’와 동일한 죄이다. 유괴의 주된 동기는 일정한 형태의 비자발적인 노역을 시키거나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범죄행위를 실행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법 체포와 억류로 구성되는 형사범죄인 것이다.¹⁴⁾ 계림의 사건은 많은 ‘위안부’들이 군에 의한 ‘유괴’로 강제동원 당했던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다.¹⁵⁾

둘째로 ‘위안부’ 모집에 있어서 그 주체가 ‘일본군’으로 명기되어 있는 것을 통해 ‘위안부’ 모집과 동원에 있어서 일본군의 책임을 엿볼 수 있다. 판결문은 모든 잔학행위의 주체를 ‘일본 육해군’으로 기술하였고, 더 나아가 “일본 정부 혹은 군대의 지도자들에 의해, 명령, 허락 하에 이루어진 것”임을 명기하고 있다. 이는 ‘위안부’의 모집은 군의 관여와 묵인 혹은 적극적인 지시하에 강제적으로 동원된 것을 입증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군의 관여 하 일본군 ‘위안부’ 모집책이 실시되었다는 것은 당시 육군성이 발부했던 통첩장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¹⁶⁾

2) ‘선서진술서’ 및 ‘심문 조서’ 속 ‘위안부’의 강제동원성

도쿄재판에 제출된 잔학행위 관련 증거서류는 132회 공판(1946년 12월 16

13) 極東國際軍事裁判所(1949) 前掲書 p.263

14) 上杉聰(2014) 『拉致事件としての慰安婦問題—強制連行問題で撤退した朝日新聞』 『戦争責任研究』 第83号 p.11

15) 吉見義明外編 『「慰安婦」・強制・性奴隷:あなたの疑問に答えます』 御茶の水書房 p.108

16) 大沼保昭編(2007) 『慰安婦問題という問い—東大ゼミで「人間と歴史と社会」を考える』 勁草書房 pp.23-24

일)에서 153회공판(1947년 1월16일)까지 법정 증거번호 1490-2157까지 총 669건이다. 이중 성폭력 관련 증거서류로 제출된 진술서, 공술서, 심문조서 속 ‘위안부’ 관련 자료는 총 7건이다. 이 장에서는 총 7건의 진술서와 심문조서 및 법정 번호 353 선서진술서- ‘계림 군사위원회 행정원 전범증거조사 소대’의 진술자료를 포함하여 총 8건의 진술 자료를 통해 ‘위안부’의 동원 수법과 형태 및 동원 주체를 분석하고자 한다.

각 자료명은 선서진술서, 공술서, 심문조서, 보고서, 구술서 등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이 모든 자료는 선서진술서와 같은 방법과 형식으로 수집된 전범 기록자료들이다. 진술서와 공술서는 피의자가 경찰이나 검찰등에서 진술한 내용을 적은 서류를 뜻하며, 선서진술서는 “상기 보고는 일본인 전범자의 진문에서 얻은 보고와 본건 관계자들의 선서진술로 집록된 것입니다 나는 상기의 사실은 진실로 상술의 보고서에 상이점이 없는 것을 정보장교급 및 일본어 통역으로서 맹세하며 단언합니다.”¹⁷⁾처럼 진술한 내용이 사실임을 선서하는 내용이 증명서처럼 첨부되어 있는 자료이다. 심문조서는 형사 소송에서 피고인, 피의자, 증인, 감정인, 통역인 등의 진술과 심문의 전말을 적은 문서를 뜻한다. 법정증거번호 1702의 자료 “일본해군점령기간 중 네덜란드령 인도서부 보르네오에서의 강제매음행위에 관한 보고¹⁸⁾의 내용도 자료명은 보고서이지만, 내용은 네덜란드 정보부(NEFIS)에 소속된 정보 장교와 일본어 통역의 헤이브룩(J. N. Heijbroek) 대위가 집필한 심문조서이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자료명에 따른 구별없이 법정 증거자료 번호(E로 표기되어 있음)의 번호 순번에 따라 전범자들의 진술서 내용을 통해 당시 ‘위안부’ 동원의 수법과 형태 및 동원 주체를 확인하고자 한다.

(1) E.1701 <폰티아낙 학살사건에 관한 1946년 3월 13일자 하야시 슈이치(林秀一)서명부 심문조서>¹⁹⁾

17) 吉見義明監修(2011) 『東京裁判性暴力關係資料』 現代史料出版 p.210(원문 자료에 기초하여 필자가 번역)

18) (인도네시아·볼르네오島ボンティアナック日本海軍占領期間中蘭領東印度西部ボルネオに於ける強制売淫行為に関する報告) (1946년 7월 5일)

19) 『인도네시아·볼르네오島ボンチヤナック虐殺事件に関する一九四六年三月十三日付林秀一署名付訊問調査』 吉見義明(2011) 前掲書 pp.204-205

이 조서는 1946년 3월 13일 전범 용의자 하야시 슈이치(林秀一)가 폰티아낙 임시 군법회의 예심위원 앞에서 진술한 내용이다. 이 조서에 따르면 하야시(24세)는 일본 이시카와(石川)현 출신의 해군군속으로서 1943년 7월 13일 폰티아낙 도착하여 경비대장 우에스기(上杉) 게이메이 대위가 있는 곳에 배치되었다. 하야시는 이후 해군 정보기관의 지방부장이 된다. 이하의 진술은 그가 우에스기의 명령을 따라 ‘체포’해 온 3명의 여성들을 ‘위안소에 강제로 넣기 위한 구실’을 만들기 위해, 이들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발가벗기고 폭행’한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이다.

(생략)...저는 이 부인을 손바닥으로 친 것을 인정합니다. 또한 그들을 발가벗긴 것도 인정합니다. 이것은 우에스기의 명령으로 한 것이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3명의 부녀는 한시간 알몸으로 서 있어야 했습니다. ...(생략)... 저는 이 부인들은 실제 벌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억류한 것은 그들을 **위안소에 넣을 수 있는 구실을 만들기 위해 우에스기의 명령으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발가벗긴 것은 그들이 일본인과 밀접하게 된 것을 그들이 인정하도록 강요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야시는 진술에서 그들이 벌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위안소에 집어넣기 위한 구실을 위한 만들기 위해 ‘갑박’하였으며, 여인들을 5, 6일간 감방에 억류하였다가 위안소로 보냈다는 진술이다. 이는 ‘위안부’ 동원의 수법 및 행태에 있어서 ‘협박’ 및 ‘체포’에 의한 ‘강제동원’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상사의 명령에 따라 해군 군속이 ‘위안부’ 동원을 한 사실은 ‘위안부’ 동원의 주체가 ‘업자’가 아닌 ‘군’이라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²⁰⁾

(2) E.1702 <인도네시아 보르네오섬 폰티아낙 일본해군점령기간 중 네덜란드령 인도서부 보르네오에서의 강제매음행위에 관한 보고>(21)

이 보고서는 일본인 전범자의 심문으로부터 얻은 정보 및 관계자의 선서진

20) 요시미요시아키, 남상구 옮김(2013) 『일본군 ‘위안부’ 그 역사의 진실』 역사공간 p.35

21) 『インドネシア・ボルネオ島ボンティアナック日本海軍占領期間中蘭領東印度西部ボルネオに於ける強制売淫行為に関する報告』 吉見義明(2011) 前掲書 pp.207-210

술을 토대로 한 것으로서, 네덜란드 정보부 헤이지브로엑(J. N. Heijbroek) 육군 대위 이름으로 작성된 것이다. 보고서에는 네덜란드 정보부의 공식기록으로부터 발췌한 것이라는 기록과 함께 네덜란드 정보부 과장 육군대위의 서명이 있는 증명서도 첨부되어 있다.

보고서의 대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943년 전반 폰타아낙 해군수비대 사령해군소사 우에스기는 공식위안소(official brothel)를 설립하라는 명령을 내린다. 당시 위안소는 해군 직원전용과 일반인용 두 종류로 분류되어 있었다. 해군 직원전용의 위안소는 수비대가 경영하였으며 해군대위 스가사와가 주임 이고, 일상 사무는 조장 와타나베가 담당하였다. 해군특별경찰(특경대)은 ‘위안부’를 끊임없이 보충하도록 명령받았기 때문에 특경대원은 마을에서 부녀자를 ‘체포’하여 강제적으로 의사의 진찰을 받게한 후 위안소에 강제로 들어가게 하였다. 이러한 체포활동은 주로 각병 조장들에 의해 행해졌다. 이와같은 내용은 아래의 진술서 인용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다.

1943년 전반에 폰타아낙 해군수비대 사령해군소사 우에스기 게이메이는..(생략).. 그는 동시에 공식 위안소를 설립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이들 성위안소는 2종류로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생략)..해군직원용의 성위안소는 수비대가 경영하였습니다. ..(생략)... 일본인과 이전부터 관계가 있었던 부인들은 첩조망이 둘러쳐진 이들 성위안소에 강제 수용되었습니다...(생략)...해군특별경찰(특경대)가 이들 성위안소에 위안부를 끊임없이 보충하도록 명령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 목적을 위해 특경대원은 거리에서 부인을 붙잡아서 강제적으로 의사의 진찰을 받게 한 다음 그들을 성위안소에 넣었습니다. 이들 체포는 주로 각병 조장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생략)...이들 성위안소에 부인들을 역시 특경대가 진력을 다해 모집하였습니다...(생략)...

위의 진술 내용은 ‘위안부’의 동원 행태와 수법에 있어서 ‘강제동원’의 전형적인 수법과 행태, 동원의 주체에 대해 중요한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 진술이 보여주고 있는 사실은 위안부 동원의 수법, 행태에 있어서 ‘체포’ ‘납치’에 의한 ‘강제연행’이 공공연하게 일본군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특경대원들은 성위안소에 부인들을 끊임없이 보충하기 위해 거리에서 붙잡아서 ‘강제연행’ 하여 위안부들을 동원하였다. 이는 아베내각에서 부정하고 있는 ‘협정의 강제성’의 실상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로 ‘위안부’ 동원 주체가 민간업자가 아닌 ‘군’이라고 특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진술서를 통해 ‘위안부’의 강제연행, 체포에 특경대 및 군대의 조장이 주동적으로 일을 담당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위안소의 경영 및 일상 사무까지 모두 해군 대위와 조장이 담당하였다는 것은 군 ‘위안부’ 제도의 운영 및 동원의 주체는 업자가 아니라, ‘군’이라는 사실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고 할 것이다.

(3) E.1725 <인도네시아 자바섬 마겔랑 예 베르만의 심문조서>²²⁾

이 심문조서는 일반억류자로서 수용소에 억류되어 있던 예 베르만이라는 네덜란드 여성의 선서진술서이다. 대략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베르만은 무테랑 민간 수용소에 억류되어 있던 민간인이다. 그녀는 1944년 1월 28일 일본군 포로수용소의 사무실에 출두하라는 부녀회 지도자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녀는 별다른 의심없이 포로수용소 사무실에 갔는데 그 곳에 있던 일본군에 의해 바로 마겔랑의 티그라운이라는 수용소에 연행되었다. 이곳에 연행되어 온 여인들은 그녀 외에 6명이 더 있었다. 1944년 2월 3일 일본인 의사에 의해 건강진단을 받으면서 비로소 위안소에 가게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리고 바로 그날 밤부터 3주간 동안 일본군 헌병들에게 강간을 당하게 된다. 일본군은 자신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남편을 해치겠다는 ‘협박’을 하면서 강간하고 위안소로 보냈다는 내용이다.

저는 무테랑 민간 수용소에 억류되었습니다...(생략)...여기서 나는 3명의 일본인에게 인도되어 마겔랑으로 수송되어 오후 4시에 도착하였습니다. 우리들은 **티그라운** 이라고 불리는 14개의 가옥으로 이루어진 수용소에 연행되었습니다...(생략)...여기서 우리들은 일본인을 위한 위안소에 가는 자들이라는 것을 들었습니다...(생략)... 병사 중 한명이 나를 방으로 끌고갔습니다. 나는 헌병장교가 들어올 때까지 반항하였습니다. **그 헌병은 우리들은 일본인을 접대하지 않으면 안된다 왜냐하면 만약 우리들이 응하지않으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는 우리들의 남편에게 그 책임을 묻겠다고 하였습니다.**...(생략)... 그는 나를 발가벗기고 나의 양팔을 뒤로 묶고 무력

22) 「インドネシア・ジャワ島マゲランイエ・パールマンの尋問調書」(1946년 5월 16일), 吉見義明(2011) 前掲書 pp.218-221

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상태가 3주간 계속되었습니다.

이하 진술서의 내용을 보면 일본군이 여인들을 속인 채 연행하여, ‘위안부’로서의 역할을 강요한 것을 볼 수 있다. ‘위안부’ 동원 행태 및 수법에 있어서 ‘속임수’와 ‘강간’ ‘폭행’ 가족관계를 이용한 ‘협박’을 통한 강제동원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진술서이다. 또한 동원의 주체는 일본군 헌병장교들로서, 현지인을 이용하여 포로수용소로 출두하게 하였으나, 이들을 수용소에 감금하여 강간하고, 위안소로 보낸 주체는 다름아닌 헌병대원들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진술서의 내용 역시 동원의 주체는 일본군 헌병이었음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고 할 것이다.

(4) E.1792 <포르투갈령 티모르(동티모르) 루이스 안토니오 누메스 로드리게스의 선서진술서>²³⁾

본 진술서는 포르투갈인 ‘루이스 안토니오 누메스 로드리게스’ 라고 하는 의사사무원에 의한 선서진술서이다. 진술에 따르면 일본군은 점령지에서 약탈과 고문, 구타등을 일삼으며, 그 마을의 리더격인 추장, 족장을 협박하여 원주민 여자들을 강제로 위안소에 보내도록 협박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일본군은 마구잡이식 잔학행위를 통해 두려움을 심게하고 이를 이용하여 마을의 추장을 협박하여 위안소에 원주민 여인들을 보내도록 강요하였다. 그리고 만일 마을의 여자들을 위안소에 보내지 않으면, 추장의 친족들을 위안소에 데리고 갈 것이라고 협박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나는 일본군이 처음 “텔리”를 점령한 1942년 2월 20일에 “텔리”에 있었습니다. 1943년 “웃스”에 있었을 때 나는 일본인이 “게리미아스” 라고 하는 이름의 원주민 추장과 함께 원주민을 구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일본인은 추장과 다른 2-3명의 원주민에게 드들의 손을 묶은 뒤 담뱃볼로 지지거나 코를 막고 입으로 물을 붓거나 하면서 고문을 하였습니다...(생략)... **1942년 일본인이 텔리의 중국인과 그 밖의 집집에 들이닥쳐 약탈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일본인이 추장에게 원주민 여자들을**

23) 『ポルトガル領チモール(東チモール)ルイス・アントニオ・ヌメス・ロドリゲスの宣誓陳述書』(1946년 6월 26일). 吉見義明(2011) 前掲書 pp.232-233

위안소에 보낼 것을 강요한 많은 장소를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만약 추장이 여자들을 보내지 않으면 그들이 곧장 추장집에 가서 그들의 친족 여자들을 이 목적으로(위안소에 보내기 위해) 데리고 갈 것이라고 협박하였습니다.

이 진술 내용에는 ‘위안부’ 동원 수법과 행태에 있어서 전형적인 방법이 나타난다. 점령지의 리더들을 협박하여 일본군의 조력자가 되도록 하고, 이들을 통해 원주민 여인들을 ‘위안부’로 동원한 것이다. 그리고 일본군의 방침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가족들에게 위해가 가해진다고 ‘협박’하는 방법이다. 이 진술을 통해 명백하게 알 수 있는 것은 현지인 업자 혹은 리더들에 의해 ‘위안부’가 모집되었다고 하는 것도 배후에는 일본군의 협박이나 명령, 지시가 있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지인들의 속임수나 협박에 의한 ‘위안부’ 동원조차, 엄격한 잣대로 보자면 동원의 주체는 ‘일본군’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일본군의 책임을 면피하기 위해 ‘위안부’ 강제동원의 책임을 민간업자나 현지인들에게 떠넘기는 것은 또다른 속임수에 불과하다.²⁴⁾

(5) E.1794. <인도네시아 모아섬 오히라 세이다이 육군 중위의 선서진술서>²⁵⁾

모아섬 오히라의 진술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육군 중위 오히라 세이다이(27세)는 다나카부대 하야시대 소속으로서, 1944년 9월에는 모아섬의 지휘관을 맡았다. 오히라는 1944년 9월 모아섬에서 헌병대를 공격했다는 이유로 세르마 타섬 및 로에안섬의 주민 포로 약 40명을 살해하도록 명령하고, 헌병대를 공격한 자들의 딸 5명은 강간 후 강제로 위안소에 보냈음을 진술하고 있다. 이 위안소에는 강간 당한 후 8개월동안 감금당한 채 위안부로 종사하게 된 6명의 여성들이 있었으며, 이들 중 5명은 강제로 위안소에서 일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문맥상 6명의 여성들 모두 강간, 협박, 감금으로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했음을 알 수 있다.

문: 어떤 증인은 당신이 여성들을 강간하고, 그 여성들은 병영에 끌고가 일본인용

24) 保坂祐二(2019) 『文書・証言による日本軍「慰安婦」強制連行』論創社 pp.240-243

25) 『インドネシア・モア島オハラ・セイダイ陸軍中尉の宣誓陳述書』(1946년1월13일) 吉見義明(2011) 前掲書 pp.234-238

으로 제공하였다고 말하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답: 나는 병사들을 위해 위안소(娼家 brothel) 1채를 마련하여 나 자신도 이용했습니다.

문: 여성들은 그 위안소에 가는 것을 흔쾌히 승낙했습니까.

답: 어떤 이는 승낙했고 어떤 이는 승낙하지 않았습니다.

문: 몇 명의 여성이 그곳(위안소)에 있었습니까.

답: 6명입니다.

문: 이 여성들 중 몇 명이 위안소에 들어가도록 강제되었습니까.

답: 5명입니다.

문: 왜 이들 여성들은 위안소에 들어가도록 강요당했습니까.

답: 그들은 헌병대를 공격한 자의 딸들이었습니다.

문: 그렇다면 이 여성들은 부친들이 한 일에 대한 벌로써 위안소에 들어 가도록 강제되었다는 것입니까.

답: 그렇습니다.

이 진술서를 통해 알 수 있는 ‘위안부’ 동원 수법은 일본군에 의한 ‘강간’ ‘폭행’ ‘감금’이라고 하는 수법이다. 이들은 헌병대를 공격했다는 부친의 행동에 대한 ‘협박’으로 연행당했으며, 강간 후 위안소로 끌려갔다. 동원의 주체는 육군 중위로서 ‘일본 육군’이라고 할 수 있다.

(6) E.2120 <베트남 랑선 니엔 티통의 구술서 발췌>²⁶⁾

이 구술서에는 길을 가다 거리에서 체포되어 헌병대에 끌려가 8일간 감금, 난폭하게 구타당한 니엔 티통의 진술이 나온다. 그녀는 이 후에도 여러 번 체포되어 프랑스인과의 교제를 야단맞는데, 이는 전후 문맥으로 볼 때, 사실관계 여부와 상관없이 위안소에 강제하기 위한 겁박 수법임을 알 수 있다. 그녀는 랑선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광안에 설치한 위안소에 가도록 강요당한 사실을 진술하였다. 이하 인용문은 구술서 내용 중에서 일본군에 반복하여 체포되면서 그녀를 비롯한 여러 명의 여성들에게 위안소에 가도록 강요한 부분만을 발췌한 것이다.

26) 『ベトナム・ランソンニエン・ティトンの口述書抜粹』吉見義明(2011) 前掲書 p.248

..(생략).. 저는 거리에서 일본인 3명에게 체포되어 인도차이나 보안대의 병원의 후방에 있는 헌병대에 인치되었습니다..(생략).. 그 후 저는 여러 번 체포되어 난폭하게 구타당했습니다. ..(생략).. 랑선에서 조사받는 동안 일본인들은 **프랑스병과 함께 생활하고 있던 우리나라 사람 여러 명에게 그들/일본인들이 광안(光安:TIENYEN)에 설치한 위안소에 함께 가도록 강제하였습니다....(생략)..**

위의 진술을 통해 베트남 지역에서의 ‘위안부’ 동원의 수법 및 행태도 납치, 체포, 겁박, 폭행 및 구타에 의한 ‘강제동원’의 수법이 활용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동원의 주체는 ‘일본군 헌병대’이었음을 볼 수 있다.

(7) E.2157 <프랑스령 인도차이나에서의 잔학행위 페르난도 가블리리그 공술서>

이 공술서는 증인 프랑스 육군대위 페르난도 가블리리그가 프랑스령 인도차이나에서의 민간인 및 포로를 향해 행해진 일본군의 B·C 급 전범조사 결과에 대해 선서진술서를 통해 증언한 것이다.²⁷⁾

이 진술서에는 직접적으로 체포, 연행과 같은 단어는 나오지 않으나, 문맥상 어떤 부인과 14살의 소녀는 연행되어 강제로 수주간 일본 병사들과 함께 지내면서 성적 학대와 폭행을 당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내용이다. 이로 인해 강제연행되었던 두 사람 중 발광한 한 사람은 정신이 돌아버린 것으로 보인다. 50여명의 일본군들과 함께 한 곳은 공식위안소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진술의 내용상 준위안소에 해당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다.

살육을 업적으로 쳤는데, 여기에서는 프랑스인 백명이 학살당했습니다. 상기 각 지에서는 프랑스인 여자에 대한 능욕행위(강간하여 욕보임)가 있었습니다. **어떤 부인과 14살이 되는 그 여동생은 강제로 수주간 약 50명의 일본 병사들과 함께 살아야 했으며 그 학대와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 중 한사람은 발광하였습니다. 그녀들은 둘 다 그 후 처형당했습니다.** 또한 다른 예로는 프랑스에서 15살이 되는 소녀와 그 모친이 강간당하고 살해되었다는 예도 있습니다. **게다가 수많은 지방에서 원주민 부녀자들은 매음행위를 강제당했습니다.** 일본군의 다른 부대 제 21사단 지구에서도 프랑스 네덜란드 서양인 포로의 살육은 빈번하게 있었습니다.²⁸⁾

27) 『仏印における残虐行為ガブリラグ・フェルナン供述書』吉見義明(2011) 前掲書 pp.270-271

이 진술서를 통해 알 수 있는 ‘위안부’ 동원의 수법은 강간, 폭행, 감금을 통한 강제매음 행위, 강제동원성이다. 이 진술에서도 언급하고 있듯이 이러한 패턴의 진화행위는 수많은 지방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사건 역시 다발적 사건의 대표적인 예에 불과하다. 동원의 주체는 ‘일본군’으로서 일본군이 주둔한 지역에서 일어난 일본군에 의한 강간, 강제매춘, 살육과 같은 잔학행위가 얼마나 야만적이고 잔인한 것이었나를 잘 보여주는 진술이라고 할 수 있다.

(8) E.353 <계림 군사위원회 행정원 전범증거조사 소대(계림시민 항소 - 1)>²⁹⁾

계림을 점령한 일본군이 여공의 명목으로 모집한 여성들을 강제하여 군대의 향락에 제공한 것을 기록한 진술서로서 계림 시민 9명에 의한 선서진술서이다. 이 자료는 아사히 신문 2007년 4월 15일자에서 소개, 발표되었다. 이는 판결문에 명시된 계림의 사건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해 주고 있다.

적군이 우리 계림을 침략한 1년간의 기간동안 간음, 포로, 약탈 등 하지 않은 것이 없고, 나가나와(長繩大尉) 대위 일본 후쿠오카 현 사람은 적부흥지부장(敵復興支部長)직을 담당했는데, 그 사람이 음흉하고 악독하여 계림시에 있는 가짜 신문사 및 문화기관을 자기의 지배하에 두고 그것들을 우리 민중의 회유 및 노예화의 중심 기관으로 삼고, 가짜 조직원을 이용하여 공장 설립을 홍보하고 사방에서 여공을 불러들여서는 여택문(麗澤門) 밖으로 데리고 나가 **강박(강제로 협박)하여** 기녀(위안부)로서 짐승과 같은 군대의 성적 쾌락을 위해 제공했다. 나가나와의 비서 스키(일본여성)은 그의 행위를 힘써 도와 이에 더해 이 적이 락군로(樂群路)에 있었던 이자원에 헌병대를 설립하여 대장 이토는 항상 각처에서 잡아온 포로를 전부 중노동자로서 정미, 흙 운반등을 시키고, 만약 조금이라도 틀린 일을 하면 살해하거나 포로로 삼았다.³⁰⁾

이 진술을 통해서 일본군의 ‘위안부’ 동원에 있어서 전형적인 동원 수법을

28) 吉見義明(2011) 前掲書 pp.270-271

29) 『中国桂林軍事委員会行政院戰犯罪証拠調査小隊』桂林市民控訴其の一, 吉見義明(2011) 前掲書 p.105

30) 吉見義明(2011) 前掲書 pp.105-106

확인할 수 있다. 육군 대위 나가나와는 가짜 신문사 및 문화기관을 민중의 화요 및 노예화의 중심 기관으로 삼고, 가짜 직원들을 통해 공장에서 일하게 해준다는 감언, 사기, 속임수를 통해 ‘위안부’를 동원했음을 엿볼 수 있다. 이 진술은 동원의 주체가 나가나와 휘하에 있었던 직원들이나 비서가 아니라, 나가나와대위자신, 일본군에 의한 동원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상 도쿄재판의 증거자료의 내용에서 확인한 ‘위안부’ 동원 수법과 강제 동원의 형태, 동원의 주체를 분석,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표2> 원문 자료 분석에 기초하여 연구자가 작성

법정자료번호	위안부 동원 수법과 강제동원 형태	동원 주체
E.1701	‘검박’ ‘협박’ 및 ‘체포’	해군 군속
E.1702	‘체포’ ‘납치’	해군특별경찰
E.1725	‘속임수’와 ‘강간’ ‘협박’‘폭행’	일본군헌병장교
E.1792	‘협박’ 추장(현지인 리더) 통한 ‘연행’	일본군
E.1794	‘강간’ ‘협박’ ‘구타’	일본육군중위
E.2120	‘체포’ ‘감금’ ‘구타’ ‘폭행’	일본군 헌병대
E.2157	‘강간’ ‘감금’ ‘폭행’	일본군
E. 353	‘유괴’ ‘속임수’ ‘협박’	일본육군대위
판결문(8장)	‘감언’ ‘속임수’ ‘유괴’	일본군(육군)

위의 도표에서 알 수 있듯이 도쿄재판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는 ‘위안부’ 동원의 수법은 ‘속임수’ ‘사기’ ‘유괴’ ‘협박’ ‘강간’ ‘감금’ ‘폭행’ ‘납치’ ‘체포’ 과 같은 강제적 수단이 강하게 나타나는 ‘강제동원성’의 특징을 여실히 보여 주고 있다. 또한 그 동원 주체는 판결문에서도 명백히 명시하고 있고, 진술서의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일본육해군’ 즉 ‘일본군’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4. 결론

이상 본 논문은 대일전범재판자료 중 ‘위안부’ 관련자료로 확인된 자료, 판결문과 선서진술서, 심문조서와 같은 법정 자료들을 1차 자료로 하여 일본

군 ‘위안부’ 동원의 행태와 수법 및 동원의 주체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도쿄재판부가 판결문에서 인정하였듯이 일본군이 각지에서 행한 여러 잔학행위처럼 ‘위안부’ 강제동원은 “거의 똑같은 패턴”으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원문 자료에 입각하여 그 위안부 동원의 수법과 행태를 고찰한 결과, 모두가 자신의 의사에 반해 강제적으로 동원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패턴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보면 가장 많이 반복적으로 보이는 행태는 첫째로 ‘협박’ 특별히 가족, 친족과 연루된 협박, 겁박을 들 수 있다. 가족의 잘못으로 자신이, 혹은 자신 때문에 가족이 위협에 처할 수 있다는 ‘협박’을 통한 강제동원 수법은 가장 많이 보이는 ‘위안부’ 동원 수법의 하나이었다. 모아섬의 경우 부친이 헌병대를 공격했다는 이유로 위안소에 연행되었고, 자바섬 마겔랑의 경우 연행되어 온 여성들에게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남편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협박하였으며, 동티모르의 경우 추장이 위안소에 여성을 조달하지 않을 경우 이들의 친족을 위안소로 보내겠다는 ‘협박’을 통해 여성들을 위안소에 강제하게 하였다. 또한 인도네시아 폰티아낙의 경우도 위안소에 끌려간 여인들이 도망할 경우 가족들을 해치겠다는 ‘협박’을 당했으며, 실제로 도망한 한 소녀의 어머니가 살해되는 일도 있었다.

둘째로 많이 보이는 ‘위안부’ 동원 수법 패턴은 ‘속임수’를 통한 강제동원이다. 이 ‘속임수’의 경우는 계림의 경우처럼 좋은 직업이 있다고 속여서 모집한 경우도 있으나, 아무런 용의가 없는 여인들을 잡아서, 이들에게 베트남의 니엔티선이나 인도네시아 폰티아낙의 경우 일본인과 내통한 죄가 있는 것처럼 속여서 강제한 사례도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수치심’을 유발하여 강제한 경우도 반복하여 나오는 ‘위안부’ 동원의 패턴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체포해 온 여성들을 발가벗겨 수치심을 자극하여 자포자기하도록 하여 위안소에 강제하는 수법이다. 이는 협박이나 속임을 통해 위안소에 연행해 온 여성들에게 ‘위안부’로서의 역할을 강제하기 위한 수법으로 이용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아베 내각이 주장하는 ‘협의를 강제성’을 포함하는 납치, 체포에 의한 강제연행의 패턴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유불문하고, 거리에서 여인들을 마구 잡이로 체포하여 연행하는 패턴이다. 인도네시아의 폰티아낙 특경대는 위안소에 여인들을 공급하기 위해 ‘진력을 다해’ 거리에서 무차별적으로 체포, 연행하였음을 볼 수 있고, 베트남을 비롯한 프랑스령 인도차이나에서 여인들

이 강제로 체포되어 위안소에 강제되어야 했음을 볼 수 있었다. 이는 폰티아낙의 경우 각병 조장과 특경대와 같은 관헌들에 의해 이루어진 납치, 체포 형태의 ‘강제연행’으로서, 일본군 ‘위안부’ 동원 수법에 있어서 가장 전형적인 방법 중의 하나로 보인다. 관헌과 같은 공권력에 의한 ‘위안부’의 강제연행을 부정하는 아베 총리의 발언과는 달리, 도쿄재판의 전범 기록 속에는 납치 및 체포에 의한 강제연행의 수법이 여러 지역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패턴 중의 하나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도쿄재판의 전범기록을 통해 나타난 일본군 ‘위안부’ 동원 수법은 너무나 명백하게 ‘일본군’에 의한, 공권력에 의한 ‘강제동원성’을 입증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일본군 ‘위안부’의 동원에 있어서 책임소재와 관련된 근거가 되는 ‘군의 관여’ 문제와 관련하여 도쿄재판의 전범기록 사료는 분명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 ‘군의 관여’ 아래 일본군 ‘위안부’가 모집되었다는 것은 이미 여러 사료 및 공문서를 통해 알려진 사실이지만, 도쿄재판의 기록들은 관여의 정도를 넘어서 적극적인 지시 및 명령, 군에 의한 철저한 경영과 관리가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따라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있어서 ‘강제동원성’은 일본 정부가 인정한 도쿄재판을 비롯한 전범재판 자료가 입증하고 있는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이라고 할 수 있다.

<参考文献>

- 요시미요시아키 저, 남상구 역(2013) 『일본군 ‘위안부’ 그 역사의 진실』 역사공간 p.35
 保坂祐二(2019) 『文書・証言による日本軍「慰安婦」強制連行』 論創社 pp.240-243
 林博史(2009) 『戦犯裁判の研究:戦犯裁判政策の形成から東京裁判・BC級裁判まで』 勉誠出版 pp.284-285
 _____(2015) 『日本軍「慰安婦」問題の核心』 花伝社 pp.42-43
 吉見義明(2011) 『東京裁判-性暴力関係資料』 現代史料出版 pp.16-272
 吉見義明 外編(2014) 『「慰安婦」・強制・性奴隷:あなたの疑問に答えます』 御茶の水書房 p.108
 半藤一利外(2015) 『BC級戦犯裁判を読む』 日本経済新聞出版社 p.8
 田中利幸外編(2013) 『再論東京裁判 何を裁き,何を裁かなかったのか』 大月書店 pp.386-387
 内海愛子(2000) 『戦犯裁判と性暴力』 緑風出版 p.95
 宇田川幸大(2018) 『考証 東京裁判:戦争と戦後を読み解く』 吉川弘文館 pp.124-125

極東国際軍事裁判所(1949)『東京裁判判決—極東国際軍事裁判所判決文』毎日新聞社
pp.238-280

上杉聰(2014)『拉致事件としての慰安婦問題—強制連行問題で撤退した朝日新聞』『戦争責任研究』第83号 p.11

大沼保昭編(2007)『慰安婦問題という問い—東大ゼミで「人間と歴史と社会」を考える』
勁草書房 p.23-24

N・ボイスター(外)(2012) 岡田良之助訳『東京裁判を再評価する』日本評論社 p.461

인터넷 자료

『いわゆる従軍慰安婦問題に関連する資料等』に関する質問主意書

http://www.shugiin.go.jp/internet/itdb_shitsumon.nsf/html/shitsumon/a186266.htm(검색일:
2019.07.06.)

<Abstract>

**The “Forced mobilization” of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system shown
in the documents of the war crimes trials against Japan**

—Focusing on the Tokyo Trial materials—

This paper aims to prove the "coerciveness" of the Japanese "comfort women" system by selecting and analyzing "comfort women" materials in the war crimes trials against Japan. Through the Kono statement(1993), the Japanese government acknowledged "military involvement" and the "coerciveness" of the Japanese "comfort women" system. However, the current Abe government, claiming to inherit the Kono statement, is trying to blur "comfort women" issues by repeatedly questioning the "Forced mobilization" of the Japanese "comfort women" system.

Thus, this paper tries to prove the "Forced mobilization" of the Japanese "comfort women" system by gathering the Japanese war crimes trials materials, including bills of indictment, written judgments, and statements of witnesses, and by checking and analyzing the original texts. As a result, it proved the "coerciveness" of the "comfort women" system in a narrow sense, the "forced mobilization" of kidnappings of comfort women, which the Abe government denies.